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0206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020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015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E

변론 종결 2015. 9. 24.

판결 선고 2015. 10.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0154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2.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54,195,9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4,195,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보증날짜'에 원고와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1> 기재 각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이후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은 <표1> 기재와 같이 최종 변경되었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1	2006-12-08	중소기업은행	136,000,000	127,500,000	2007-12-07	2013-11-29
2	2008-01-11	342,000,000	290,700,000	2009-11-10	2013-11-08	
3	2009-06-12	300,000,000	300,000,000	2010-06-01	2013-06-07	
4	2010-05-07	240,000,000	240,000,000	2011-05-06	2013-05-03	
5	2011-08-24	국민은행	272,000,000	272,000,000	2012-08-24	2013-08-23

2)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과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이 2013. 1. 17. 아래 <표2>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2013. 1. 25. <표2> 순번 제5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 등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과의 발생하였다.

<표2>

1	2006-12-08	중소기업은행	2013-03-21	127,500,000	1,187,012	128,687,012	2013-03-2120 13-04-02	4,659,520 12,670	124,014,822
2	2008-01-11	290,700,000	2,364,891	293,064,891		293,064,891			
3	2009-06-12	300,000,000	2,734,027	302,734,027		302,734,027			
4	2010-05-07	240,000,000	2,284,431	242,284,431		242,284,431			
소계	958,200,000	8,570,361	966,770,361	4,672,190	962,098,171				
5	2011-08-24	국민은행	2013-03-19	272,000,000	4,145,190	276,145,190		276,145,190	
합계	1,230,200,000	12,715,551	1,242,915,551	4,672,190	1,238,243,361				

2)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게 <표2>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표2> 순번 제1번 기재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2013. 4. 4.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1,772,600원을 지출하였다.

다.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A은 2012. 6. 21. H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따로 표시할 때는 각 그 순번만으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가) A은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2012. 12. 11., 잔금 6억 4,600만 원은 2013. 1. 25.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 3.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9.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A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한편, A은 2012년 4월경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센트랄디티에스(이하 '센트랄디티에스'라 한다)로부터 수차례 물품대금을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관련 외주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고 센트랄디티에스에게는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여 2012년 12월경 센트랄디티에스와 사이의 거래를 종료하였고, 국민연금은 2012년 3월경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2012년 4월경부터, 건강보험료는 2012년 11월경부터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표3>

안성시 J지상 공장 · 지상 공장	1	안성시 공장 용지 3,719 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000
	323,162,36014,160,000174,080,0001,511,813,360	2	국민은행	462,000,000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 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000
위 공장 부지 내 기타 건물 위 공장 내 기계·기구 소계						
3	서울보증보험(주)	138,000,000				
N	2	안성시 L 공장용지 1,239 m ² , L대 1,164 m ² , L잡종지	658,991,000	4	두산캐피탈(주)	269,000,000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 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000
		529m ² , M 대 555m ²				
안성시 M지상 공장 N M, 지상 공장위 공장 부지 내 기타 건물위 공장 내	201,387,20095,950,00010,570,000966,898,200	5	농협은행(주)	750,000,000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 m ²	1,000,411, 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 000
기계·기구·소계						
3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	1,101,349,000	합계	4,365,000,000		
합계	3,580,060,5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마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B의 증언(일부), 당심감정인 V의 시가 감정결과, 제1심의 부천시 소사구청장, 안성시장, 센트럴디티에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240,017,546원(= 잔여 구상금 1,238,243,361원 +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1,585원 + 채권보전비용 1,7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센트랄디티에스와의 거래 관련 외주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1. 17.경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정도 지난 2013. 3. 19.과 2013. 3. 21.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을마 제9호증, 을마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1.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마 제3호증(합의서)은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제1심 증인 B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을마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A이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매매대금은 상호 협의 후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 그와 같은 매매예약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므로 위 매매예약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한편, 대물변제조로 위 각 부동산을 제공한 행위는 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주 거래처가 위치한 군산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납품조건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이를 매수하였고, A의 보증사고는 센트랄디티에스와의 공급협약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결렬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매도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2) 판단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의 이에 대한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A이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실제 피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¹⁾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불과 약 2주일 후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 및 이후의 경과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농협은행 명의의 채무자 A,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는 A이 H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A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A과 피고의 각 대표이사가 대학 동문지간으로 2004년경부터 서로 교류해 왔고, A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A의 재산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피고가 A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한편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농협은행 명의의 채무자 A,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3. 1. 9.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7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가액이 당시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표4> 기재와 같으며,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4>

1	이 사건 제1,2,3 부동산	929,203,000	575,007,075	354,195,925
2	이 사건 제4,5 부동산	172,146,000	106,526,957	65,619,043
3	이 사건 제6부동산	110,640,000	68,465,968	42,174,032
합계	1,211,989,000	750,000,000	461,989,000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54,195,9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195,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부대항소의 취지에서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

별지

1) 피고는, 2013. 1. 9.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무렵 A의 거래통장(을마 제1호증의 5, 을마 제2호증의 1, 을마 제10호증의 1 내지 4, 2014. 12. 11.자 피고의 참고서면에 첨부된 예금통장 사본)으로 위 대출금 상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을마 제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